

1. 개정이유

「수산업법」 개정(법률 제21570호, 2026. 4. 21. 공포, 2026. 10. 22. 시행)으로 지구별수협과 동일하게 업종별수협 소유 어업권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지자체가 수립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의 게시 의무 추가(안 제2조제6항)

업종별수협도 지구별수협, 어촌계와 같이 지자체장이 수립한 어장이용개발계획*의 공고 내용을 게시하도록 규정

* 면허어업의 신규개발, 유효기간 연장 등 관할 수면의 이용·개발을 위해 매년 수립
나. 어업권 행사 우선순위의 예외 요건 지정(안 제32조제5항)

지자체장이 필요*한 경우 관할구역 내 업종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도 행사자 수의 하한선 지정, 행사 횟수, 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

* 어업권 어장에 대해 다수의 종사자가 참여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다. 업종별수협의 어장관리규약 제출 의무 부여(안 제33조제1항제3항)

어업권을 취득한 업종별수협의 어장관리규약 제출 의무(제1항) 및 제출된 어장관리규약 변경 시 통보 의무 부여(제3항)

라. 어업권을 취득한 업종별수협의 행사계약(안 제34조제1항제3항제4항)
업종별수협과 행사자 간 계약 체결 의무(제1항), 행사계약 해지 절차(제3항), 행사료의 사용가능 범위(제4항) 규정

마. “업종별수협” 용어 약칭 정의 상향 조정(안 제2조)으로 자구 정비(안 제3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7. ~ 8.) 예정

수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항 중 “같은 법 제15조”를 “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(이하 “업종별수협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제15조”로 한다.

제32조제5항 중 “지구별수협”을 “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1항 및 제3항 중 “지구별수협”을 각각 “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”으로 한다.

제34조제1항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“지구별수협”을 각각 “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지구별수협이”를 “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이”로, “지구별수협 또는”을 “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또는”으로 한다.

제38조제5항제4호 중 “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(이하 “업종별수협”이라 한다)”을 “업종별수협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⑤ (생략) ⑥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수산업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7항에 따라 공고한 후에는 해당 지역의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(이하 “지구별수협”이라 한다)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(이하 “어촌계”라 한다)로 하여금 그 공고 내용을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.	제2조(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(이하 “업종별수협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제15조----- --.
제32조(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) ① ~ ④ (생략) ⑤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 또는 <u>지구별수협</u> 이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 다수의 어업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업 종류별 어장 면적의 범위에서 어	제32조(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<u>지구별수협</u> 및 <u>업종별수협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업권을 행사하는 자(이하 “행사자”라 한다) 수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행사 횟수 또는 총 행사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33조(어장관리규약의 내용 등)

① 법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해당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어장관리규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제34조(어업권의 행사계약 등) ①

법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

-----.

제33조(어장관리규약의 내용 등)

① -----
----- 지구별수협 및
업종별수협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지구별수협 및
업종별수협-----

-----.

제34조(어업권의 행사계약 등) ①

----- 지구별수협 및
업종별수협-----

라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의 행사를 하거나 입어를 하려는 자와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지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또는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1. 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주소를 소속 지구별수협의 업무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

2. 3. (생략)

④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징수한 행사료 또는 입어료는 공동이익의 증진과 지구별수협 또는 어촌계의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·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

제38조(어업허가증의 발급 등) ① ~ ④ (생략)

⑤ 허가권자는 어업허가증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해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-----

-----.

-----.

1. -----
-----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-----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이 -----

-----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또는 -----
-----.

제38조(어업허가증의 발급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야 하며, 그 어업허가증의 발급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 1. ~ 3. (생략) 4. 허가받은 자의 주소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과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(이하 “업종별수협”이라 한다)	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-업종별수협
---	--